## 초·증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8. 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8. 13. 조정훈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14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(2024.9.24.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25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2.6.)

상정

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6.30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7.8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7.8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조정훈 의원)

최근 미국,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·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.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만 3~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%이며 만 10~19세는 40.1%나 되었음. 특히, 청소년(36.7%)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.

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강대훈)

개정안은 교육 목적의 사용,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,

수업 등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·교권 침해를

방지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, 학생-교사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며, 학생들의 학교 내 대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할 수 있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 이 가결되었고,

2024년에는 200개 중학교에 대하여 등교할 때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'디지털 쉼표'조치를 도입하였으며, 그 성과를 평가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초·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.

다만,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·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며, 「학교생활지도규정」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는 사실과,

지난 2023년 9월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하면서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학교 내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문정복)

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,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,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 반영 폐기